

() 시험·검사의뢰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뒤쪽 참조
의뢰인	① 성 명	② 생년월일	
	③ 주 소	(전화번호:)	
제조사	④ 성 명		
	⑤ 주 소		
의뢰내용	⑥ 제조지 또는 산지		
	⑦ 시험·검사 대상물명		
	⑧ 시험·검사 항목		
	⑨ 의뢰목적		
	⑩ 제조법 및 참고사항		
	⑪ 시험·검사성적서 필요부수	부	()외국어번역문

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·검사의뢰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·검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시험·검사성적서 및 외국어번역문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의뢰인 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첨부자료	뒤쪽 참조	수수료 별도 고시 참조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의뢰인 및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①·④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외국어번역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⑪란의 ()안에 해당 외국어명을 표기하고, ①·③란의 성명·주소를 해당 외국어로 명확하게 적습니다.

시험·검사 의뢰 첨부자료

1. 의약품 등 검정(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단일제제): 통관예정보고서(수입의 경우) 1부, 시험·검사 대상물
2. 의약품 등 검정(생물학제제를 제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의약품): 통관예정보고서(수입의 경우) 1부, 시험·검사 대상물
3. 의약품 등 검정(수출용 혈장분획제제): 자체 시험·검사 결과서, 시험·검사 대상물(시료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)
4. 수입생약제제검정(단일성분제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 함량시험 및 아니필락시스, 항원시험): 통관예정보고서(수입의 경우) 1부, 시험·검사 대상물
5. 수출인삼제제검정: 시험·검사 대상물
6. 재조합의약품검정: 기준 및 시험·검사방법 심사결과서 1부, 시험·검사 대상물, 그 밖에 시험·검사에 필요한 자료 1부
7. HIV항체검사: 시험·검사 대상물
8. B형간염(항체)검사 및 C형 항체검사: 시험·검사 대상물
9. 식품검사: 시험·검사 대상물
10. 식품첨가물검사: 시험·검사 대상물
11. 기구·용기 및 포장시험: 시험·검사 대상물
12. 식품 중 미생물검사[일반미생물검사(항목당), 혐기성균 및 식중독균 검사]: 시험·검사 대상물
13. 식품비타민검사: 시험·검사 대상물
14. 식품 중 방사능오염검사: 시험·검사 대상물

처리기간

의약품 등 검정(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단일제제)	30일
의약품 등 검정(생물학제제를 제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의약품)	55일
의약품 등 검정(수출용 혈장분획제제에 한함)	35일
수입생약제제검정 - 단일성분제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 · 함량시험 및 아니필락시스 · 항원시험	55일 40일
수출인삼제제검정	25일
재조합의약품검정	62일
HIV항체검사	7일
B형간염(항체)검사 및 C형 항체검사	10일
식품검사	25일
식품첨가물검사	25일
기구·용기 및 포장시험	20일
식품 중 미생물검사 - 일반미생물검사(항목당) - 혐기성균 및 식중독균 검사	10일 35일
식품비타민검사	35일
식품 중 방사능오염검사	20일

처리 절차

의뢰서 작성 → 접수 (민원실) → 시험·검사 → 결재 → 성적서 발급

신청인

처리기관: 식품의약품안전처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(의약품 등 시험·검사담당부서)